

난임·우울증상담센터 설치운영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난임부부, 임신부 및 양육모(가족) 대상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 제공		
사업비 (당해년도)	338,000천원	[국비]119,000천원	[시비]219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시민건강국	스마트건강과	채명준 02-2133-7560	이미점 02-2133-7576	박정민 02-2133-7591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3예산액 (A)	2024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119,000) 238,000	(x119,000) 338,000	(x-) 100,000	(x-) 42
민간경상사업보조	(x119,000) 238,000	(x119,000) 338,000	(x-) 100,000	(x-) 42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
민간경상사업보조	○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338,000,000원	= 338,000천원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
------	------------

3 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난임부부, 임신부 및 양육모 대상 심리상담,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, 심리적 문제 완화로 삶의 질 향상

사업근거

- 모자보건법 제10조의5
- 모자보건법 제11조의4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4.1.~12.(연례반복)
- 지원대상 : 난임부부 및 임신부, 양육모(가족)
- 추진방법 : 보건복지부의 공모에 공모선정으로 센터 설치 및 운영
- 사업의 주요내용 : 난임부부 및 임신부, 양육모 대상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제공

추진경위

- '17.6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운영 근거 수립

2024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338,000	
난임상담센터 설치 공모신청	2024.01~2024.12	338,000	난임부부, 임신부 및 양육모 대상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 제공

4 사업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21년도	
2022년도	

2023년도	○ 서울권역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 설치(2개소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난임부부 및 임산부의 심리상담 등 지원으로 정서적, 심리적 문제 완화 및 삶의질 개선